

대구광역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'이웃살핌 확인조사' 안내

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가 늘어남에 따라, 대구광역시는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를 미리 찾고 돕기 위한 **'이웃살핌 확인조사'**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
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함께 돌보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조사기간** 2026년 4월 ~ 10월
- 조사대상** 대구시 거주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쪽방거주자, 2025년 긴급복지대상자, 전년도 미조사자 등
- 조사내용** 생활실태 및 사회적 고립도 살핌
- 조사방법**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, 비대면 조사

[관련법령]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

-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(이하 "고독사위험자"라 한다)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